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 검 토 보 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 제정안〉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26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총괄적 검토 .....                                               | 3  |
|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                                            | 3  |
|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 6  |
| 다. 검토의견 .....                                                 | 11 |
| 라. 제정안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 .....                                      | 15 |
| 2. 주요 조문별 검토 .....                                            | 16 |
| 가. 정의(안 제2조) .....                                            | 16 |
| 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 관장 기관(안 제4조) .....                            | 18 |
| 다. 강제퇴거 대상자 등 통보 금지 및 정보 제공 요청 금지<br>(안 제7조 및 제27조 제1호) ..... | 20 |
| 라. 출생등록신청 시 첨부 서면(안 제8조제5항) .....                             | 24 |
| 마. 출생등록 신청의무자(안 제9조) .....                                    | 25 |
| 바. 출생등록신청의 확인·최고(催告) 및 직권 출생 기록(안 제10조) .....                 | 29 |
| 사.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안 제13조) .....                                  | 33 |
| 아. 출생등록부의 폐쇄(안 제19조) .....                                    | 35 |
| 자. 준용 규정(안 제30조) .....                                        | 37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4.
3. 회 부 일 : 2024. 10.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지만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

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금지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7조).

다. 출생등록의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3조).

### Ⅲ. 검토의견

#### 1. 총괄적 검토

#####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sup>1)</sup>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혼인·사망 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그에 따라 국내 등록외국인<sup>2)</sup>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국 대사관 등을 통하여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게 됨.

그러나 이때에도 등록외국인 본국의 대사관이 한국에 없거나 본국법에 따라 신분등록이 어려운 경우,<sup>3)</sup> 거주 지역이나 근로 여건 등으로 인해 적시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체류자격이 박탈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 중인 미등록외국인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예를 들어, 네팔 등 일부국가의 경우 외국에서의 출생신고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대한민국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고, 모로코 등 일부국가의 경우 미혼모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아, 모로코 국적의 모가 대한민국 내에서 혼인 외 출생자를 출산한 경우 본국법에 의한 출생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현소혜,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가족법연구 제34권2호, 2020. 7, p.150-151.

이나 난민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그에 따라 이들이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부모의 본국 및 실제 체류지인 대한민국 양쪽에서 정상적인 신분등록이 불가능하여, 신분 증명은 물론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보건·의료 및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sup>4)</sup>

한편, 감사원이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sup>5)</sup>로만 관리되고 있는 아동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정식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은 6,179명이었고, 이 중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4,025명에 달하여, 다수의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음.

---

4) 부모의 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그의 존재 및 부모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길이 없어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모의 본국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공적 신분증명서에 의해 그들의 존재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없어 본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권리 및 본국으로 입국할 권리도 누릴 수 없음. 또한 국내에서도 건강, 보육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고, 공교육 체계에 진입할 수 없어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도 갖지 못함. (최윤철,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 발제문, 2024. 9. 27, p. 23)

5)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생아 출생시 예방접종 목적으로 자동 부여되는 7자리의 임시번호. 의료기관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필수접종을 실시하고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함.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시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됨.

[표 1]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현황

(2023. 6. 26. 기준, 단위: 명)

| 출생연도<br>(나이, 2022년말 기준) | 계     | 2015년<br>(7세) | 2016년<br>(6세) | 2017년<br>(5세) | 2018년<br>(4세) | 2019년<br>(3세) | 2020년<br>(2세) | 2021년<br>(1세) | 2022년<br>(0세) |
|-------------------------|-------|---------------|---------------|---------------|---------------|---------------|---------------|---------------|---------------|
| 전체 아동                   | 6,179 | 937           | 748           | 631           | 615           | 625           | 806           | 944           | 873           |
| 보호자가 내국인인<br>아동         | 2,154 | 457           | 384           | 299           | 267           | 231           | 172           | 151           | 193           |
| 보호자가 외국인인<br>아동         | 4,025 | 480           | 364           | 332           | 348           | 394           | 634           | 793           | 680           |

주: 보호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의 구분은 친모의 인적사항 정보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불합리」, 2023. 9.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제1항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 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1년 동 협약을 비준한 이행당사국이나 현행법에 외국인 아동을 출생등록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표 2]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0년 발효)

**제 7 조 (출생등록·성명·국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1.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제정안은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적과 무관하게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체류자격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등록 관련 조문과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준용규정(안 제30조)도 따로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체계는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제정안의 조문 체계

| 장·절                           | 조    | 제목                       |
|-------------------------------|------|--------------------------|
| 제1장 총칙                        | 제1조  | 목적                       |
|                               | 제2조  | 정의                       |
|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4조  | 관장                       |
|                               | 제5조  | 권한의 위임                   |
|                               | 제6조  | 출생등록사무처리                 |
|                               | 제7조  | 통보의 금지 및 정보 제공 요청 금지     |
| 제2장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신청            | 제8조  | 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            |
|                               | 제9조  | 신청의무자                    |
|                               | 제10조 | 출생등록신청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
| 제3장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 제11조 |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              |
|                               | 제12조 | 출생등록부의 관리                |
|                               | 제13조 |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
|                               | 제14조 |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
|                               | 제15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                               | 제16조 |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
|                               | 제17조 | 출생등록증명서의 수수료             |
|                               | 제18조 | 출생등록부 기재사항의 정정           |
|                               | 제19조 | 출생등록부의 폐쇄                |
| 제4장 외국인아동의 사망                 | 제20조 |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                               | 제21조 | 사망신고의무자                  |
|                               | 제22조 | 사망신고의 장소                 |
| 제5장 불복절차                      | 제23조 | 불복절차                     |
| 제6장 신청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 제24조 | 신청서류 등의 송부               |
|                               | 제25조 | 신청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
|                               | 제26조 | 각종 보고의 명령 등              |
| 제7장 벌칙                        | 제27조 | 벌칙                       |
|                               | 제28조 | 양벌규정                     |
|                               | 제29조 | 과태료                      |
|                               | 제30조 | 준용                       |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                               | 제2조  | 적용례                      |
|                               | 제3조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신청의 특례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외국인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출생자와 모가 외국인인 혼인 외 출생자로 정의함(안 제2조).

(2)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 처리 권한을 시·읍·면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불법체류 등의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미등록외국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꺼림으로써 제정안의 실효성이 몰각되지 않도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관서장에게 통보<sup>6)</sup>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8조·제81조<sup>7)</sup>에 따른 조사 자료 활용을 위해 출생등록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6)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각 호 생략)

7)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조사

2. 삭제 <2012. 2. 10.>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4)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신청의무는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에게, 혼인 외 출생자는 모에게 부여하고, 신청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인,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의 순으로 출생등록 신청의무를 부여함. 또한, 신청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출생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지자체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5)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 의무<sup>8)</sup>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청의무자가 출생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함(안 제10조).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은 ① 외국인아동의 성명·성별, ② 출생연월일 및 장소, ③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한함), ④ 출생등록번호 등으로 함(안 제11조).

(7) 출생등록부 관리를 위하여 대법원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안 제12조),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발급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 관련 규정을 둠(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8) 그 밖에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절차를 규정하고(안 제18조 및 제19조), 외국인아동 사망시 사망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시·읍·면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을 준용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9) 부칙으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안 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한편(안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아동의 경우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안 부칙 제3조).

##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sup>9)</sup>를 도입하려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일반적인 인격권 실현과 아동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본적 전제이므로, 아동의 국적이나 부모의 내·외국인 여부 및 체류자격 여부 등에 따라 입법권자가 차별적으로 규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sup>10)</sup> 앞서 살펴본 대로 자연인으로 태어난 개인은 출생신고를 통해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로소 의료·교육·사회보장 및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헌법재판소도 최근 결정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

9) 보편적 출생등록이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출생 장소 등의 어떠한 요소나 출생여건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함(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2013.11., p.25-26).

10)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민’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다수의 연구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이슈와 논점 제2283호, 2024. 11, 사법정책연구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2024. 9. p.183, 최윤철, 앞의 발제문, p.3 2-34, 김나루,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39호(2022. 8), p.226, 서종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소고」,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주호영 국회부의장, 박홍근 국회의원, 이강일 국회의원 공동 주최) 발제문, 2025. 1. 9, p.15-19 등

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여<sup>11)</sup> ‘출생등록될 권리’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음.<sup>12)</sup>

둘째, 국제규범 준수의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7조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또한,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하여 “난민, 망명신청자 또는 불법체류 등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출생등록을 현실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협약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sup>13)</sup>고 권고하기도 하였음.

셋째, 비교법적 관점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적과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1) 특히, 이은애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하여 출생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그 보장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12)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13) 이에 대한 번역은 현소혜, 앞의 논문, p.161을 참조함.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sup>14)</sup> 먼저 미국·캐나다 등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부모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허용함. 또한, 프랑스·독일과 같이 혈통주의(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신분등록이나 출생등록에 있어서는 속지주의를 택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용하는 사례가 많음.

① 프랑스는 ‘민법’에 출생등록 규정을 두고,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동은 부모의 국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지 관할 신분관리청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② 독일의 ‘신분등록법(Personalstandsgesetz)’은 아동이 출생하면 부모의 국적·주소를 불문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일본의 ‘호적법(戶籍法)’은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법과 달리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없고,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 영토 내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출생등록이 완료됨.

---

14) 이하의 입법례는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이슈와 논점 제2283호, 2024. 11, 현소혜,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가족법연구 제34권2호, 2020. 7, 최윤철,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 발제문, 2024. 9. 27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④ 호주의 경우 각 주 별로 ‘출생과 사망 및 혼인 등록을 위한 법률(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모든 호주 내 출생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주정부·준주 정부에 신고되어야 함.

넷째,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바,<sup>15)</sup> 제정안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부합함.

다만, 일각에서는 제정안을 통해 실제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아동은 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불법체류 등 외국인부모의 자녀라는 점을 바탕으로,<sup>16)</sup>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부모의 불법체류를 묵인 또는 합법화하는 근거가 되거나 미등록외국인의 편법적 국적취득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sup>17)</sup> 제정안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15) 법무부 보도자료,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2023. 12. 28, p. 9. 참조

16)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출산 시 본국에 출생신고 후 자녀를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해당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의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17)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제정안에 따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체류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 최윤철, 앞의 발제문, p.37

## 라. 제정안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

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처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안 제8조 및 제12조), 인터넷을 이용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재개발(안 제14조) 등을 위해 2026년<sup>18)</sup>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4억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년~2030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 계    |
|-----------------------------------|-------|------|------|------|------|--------|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시스템 구축(안 제8조 및 제12조제2항) | 9,292 | -    | 929  | 929  | 929  | 12,079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재개발(안 제14조)           | 305   | -    | 31   | 31   | 31   | 397    |
| 합 계                               | 9,597 | -    | 960  | 960  | 960  | 12,476 |

주: HW 유지보수비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장비를 구입한 해(2026년)의 2년째인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8) 제정안 발의일(2024년 10월 4일) 기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함.

## 2. 주요 조문별 검토

### 가. 정의(안 제2조)

정의 조항인 안 제2조는 “외국인아동”(제1호), “출생등록”(제2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제3호)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외국인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출생자와 모가 외국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로 정의함.

#### [제정안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아동”이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출생자와 모가 외국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말한다.
2. “출생등록”이란 출생의 사실을 출생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 외국인아동의 기준연령 관련, 제정안은 「민법」<sup>19)</sup>상 미성년 개념을 사용<sup>20)</sup>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체계를 따라 ‘19세 미만’을 외국인아동의 기준연령으로 하고 있음.

19)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 가족관계등록법에 ‘아동’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고,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3.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고<sup>21)</sup> 「아동복지법」<sup>22)</sup>도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규범과 국내 개별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미성년의 기준연령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도 외국인아동의 기준연령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외국인아동의 범위 관련, 제정안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출생자’와 ‘모가 외국인인 혼인 외 출생자’로 정의함.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혼인 중 출생, 대한민국 국민인 모의 혼인 외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됨.<sup>23)</sup> 제정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대상이 되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임.<sup>24)</sup>

다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되었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sup>25)</sup>의 경우, 외국인아동을 “대

21)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제1조(아동의 정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은 한, 협약이 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2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 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24) 예를 들어,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는 현행법상 모의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한국인 부의 인지신고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외국인 모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생한 아동은 (모의 국적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한국인 부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게 됨.

한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한 바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제정안처럼 외국인아동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출생자’와 ‘모가 외국인인 혼인 외 출생자’로 정의할 경우 제정안 입법 취지에 따른 보호 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는 경우와 실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상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임.

#### 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의 관장 기관(안 제4조)

안 제4조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의 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그 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소를 두도록 함.

#### [제정안 원문]

**제4조(관장)** ①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정정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출생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②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5) 의안번호 211616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68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의 관장 기관을 대법원으로 할 것인지, 법무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하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두 건의 법안이 발의<sup>26)</sup>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에도 2025년 2월 기준으로 제정안과 유사한 한 건의 법안이 발의<sup>27)</sup>되어 있는데, 세 건 모두 동 제정안과 달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 관장기관을 ‘법무부’로 정하고 있음.

먼저, 제정안과 같이 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하는 것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을 근거로 출생신고를 포함한 국민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는바,<sup>28)</sup>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출생등록의 범위를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확장하는 것이 제정안의 기본 취지라는 점에 근거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미등록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 강제퇴거의 권한을 보유한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를 관장하게 될 경우, 미등록외국인이 출생등록에 심리적 거부감 및 강제출국 위협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반면, 관장기관을 ‘법무부’로 하는 것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는 외국인아동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의 일환이므로,

26) 의안번호 211616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68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두 안건은 모두 임기만료폐기되었음.

27) 의안번호 220675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외국인 정책’(출입국·외국인본부 소관)을 총괄하고 ‘아동 인권 보호 업무’(인권국 소관)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도 관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출생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의 기본 취지와 성격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외국인 정책 및 아동 정책 등 관련 제도·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다. 강제퇴거 대상자 등 통보 금지 및 정보 제공 요청 금지

### (안 제7조 및 제27조 제1호)

안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sup>29)</sup> 본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통보’를 금지하고(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8조 및 제81조<sup>30)</sup>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및 출입국사범 조사와 외

29)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각 호 생략)

30)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조사

2. 삭제 <2012. 2. 10.>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국인 동향조사'의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시·읍·면<sup>31)</sup>에 출생등록사무 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제2항). 아울러, 안 제27조는 안 제7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원문]

**제7조(통보의 금지 및 정보 제공 요청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외국인 출생등록사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지득한 출생아동 부모의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국사범 단속 등을 위해 출생등록된 외국인아동 부모의 등록 및 적법 체류 여부 등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우려한 미등록외국인 부모가 출생등록을 꺼리게 될 것이므로, 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 제7조와 같은 제한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sup>32)</sup>

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31) 안 제5조에서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함.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안 제7조제1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의 ‘강제퇴거 대상자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통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인바, 다른 법률에서 의무로 규정한 내용을 제정안이 금지하고 벌칙까지 두는 것이 법률 간 관계상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sup>32)</sup>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두 건의 법안<sup>34)</sup>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보의 금지” 대신 “통보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벌칙을 삭제하는 한편, 시행령이 규정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 부모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제정안에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표 5] 참고).<sup>35)</sup>

32) 최윤철, 앞의 발제문, p.38, 서중희, 앞의 발제문, p.37-38,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보고서, p.352-353

3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4) 의안번호 211616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68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표 5] 제정안과 제21대 국회 발의 유사 발의 법안 비교

| 제정안                                                                                       | 제21대 국회 발의<br>「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
| 제7조(통보의 금지 및 정보 제공 요청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통보의무의 면제 및 정보 제공 요청등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2)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금지하여 미등록외국인의 적극적 출생등록을 장려함으로써 보호되는 외국인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권리’라는 법익과, 불법체류 및 출입국사범 단속 강화를 통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이라는 법익 간 균형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 제공 가능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에 따라 조사하는 출입국사범에는 도주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영리 목적으로 집단 불법 입국을 알선(법 제93조의2제2항제1호)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포함되는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장려 목적에 치우쳐 중대한 출입국사범 조사·수사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35) 다만, 이에 대해 단순히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 등의 통보의무 이행을 강행하는 경우까지 저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등록외국인의 적극적 출생등록신청을 유인하기 위하여 통보를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서종희, 앞의 발제문, p.38)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라. 출생등록신청 시 첨부 서면(안 제8조제5항)

안 제8조는 출생 후 90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출생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제2항) 및 기재 방법(제3항 및 제4항), 출생등록신청서 첨부 서면(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원문]

**제8조(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 ① 출생등록신청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서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아동이 체류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외국인아동의 성명·성별 및 체류지
2.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신청인의 성명·출생연월일·자격

③ 외국인아동의 성명은 영문 또는 국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출생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5. 부와 모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혼인 중 출생자인 외국인아동을 부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출생등록신청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제2호),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제3호) 등, 출산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그러나 이 중 제5호에 규정된 “부와 모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혼인 중 출생자인 외국인아동을 부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출산사실’이 아니라 ‘부와 모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목적의 서류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제5항의 법문 해석상 제5호의 혼인증명 서류만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출생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바, 이 경우 실제 출산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혼인 중 출생자인 외국인아동을 부가 신청하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 서류까지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마. 출생등록 신청의무자(안 제9조)

안 제9조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신청의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제1항),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모가 하여야 하며(제2항), 모를 특정

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출생등록 비협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제3항). 한편, 신청의무자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인,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의 순서로 출생등록신청의 의무를 부담하며(제5항), 신청의무자가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 지자체장,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제6항).

### [제정안 원문]

- 제9조(신청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모가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등록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는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할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출생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거인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⑥ 신청의무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출생등록 신청의무자의 범위 관련, 안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인 아동”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

인인 출생자와 모가 외국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등록여부, 체류자격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아동의 부모는 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에 출생등록할 의무를 지게 됨.

그러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본국에 출생 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녀는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제정안에 따라 출생등록 신청을 의무화하는 것은 본국과 대한민국에 중복 출생등록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한 등록외국인이 그 자녀를 본국에 출생 신고 후 대한민국에 외국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출생등록 의무를 면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혼인 중 출생 여부의 구분 관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외국인 부모의 혼인 중 출생여부에 따라 신청의무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의무자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sup>36)</sup>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의 경우 유효한 혼인 성립 여부는 부모 국적국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사

---

3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할이므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 관장기관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혼인 외 출생(혼인신고 전 출생 포함)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신고의무자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출생등록 관련, 안 제9조제3항은 외국인인 모의 혼인 외 출생인 경우 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②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등록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가 있는 경우 출생자의 부가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sup>37)</sup>에 따른 혼인 외 자녀에 대한 부의 친생자출생 신고 제도를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외자를 출생한 모가 생부가 아닌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민법」 제844조<sup>38)</sup>에 따라 법률상 남편인 제3자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생부(生父)가 곧

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8)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바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년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개정시한 2025. 5. 31.)을 선고한 바 있음.<sup>39)</sup>

이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인 모의 경우에도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면 혼외자는 「민법」에 따라 제3자(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 경우 혼외자의 생부는 안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향후 개정 추이를 참고하여 제정안에도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바. 출생등록신청의 확인·최고(催告) 및 직권 출생 기록(안 제10조)

안 제10조는 의료기관이 외국인아동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

---

39)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모가 그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며,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모의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판결 참조).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 생부는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생부는 제3자와 혼인 중인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자신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 략)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제1항).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해당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의무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하며(제2항), 최고기간 내에 출생등록신청<sup>40)</sup>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여야 함(제3항).

### [제정안 원문]

- 제10조(출생등록신청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생등록신청 기간 내에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신청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인아동인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출생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청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등록신청 확인, 출생등록신청 최고, 출생자의 성명 등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0) 안 제10조제3항제1호의 ‘출생신고’는 ‘출생등록신청’의 오기로 보임.

지난 2023년 친모가 신생아를 살해·유기했던 사건을 계기로, 영아가 출생신고 없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어(제44조의3<sup>41)</sup> 및 제44조의4<sup>42)</sup> 신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와 별개로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시·읍·면의 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보를

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중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출생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 하여야 함.

안 제10조는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된 ‘출생통보제’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유로 안 제10조제1항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음. 이는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외국인 부모 중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sup>43)</sup> 특히 불법체류 등 미등록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기본정보인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출생정보 자체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평원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통보제’를 보완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외국인아동(특히, 미등록외국인이 부모인 외국인아동)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정보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제정안에

---

43) 서종희, 앞의 발제문, p.35

외국인아동에 맞는 별도의 출생정보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시·읍·면의 장의 출생등록신청 최고(催告)의무 관련, 불법체류 등 미등록외국인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출생정보는 출생자 모의 성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정보만을 바탕으로는 시·읍·면의 장이 출생자의 모의 체류지나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출생등록신청을 최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사.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안 제13조)

안 제13조는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증명서 기재 사항, 절차 등을 규정함.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출생등록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 신청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국가·지자체의 직무상 필요, 소송 등의 수행,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제정안 원문]

**제13조(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규정된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

임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③ 증명서는 출생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외국인아동의 성명, 출생등록번호 및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출생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1조에 규정된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출생등록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출생등록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러나 안 제7조제2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 및 출입국사범 조사와 외국인 동향조사’ 등을 위해 시·읍·면에 출생등록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안 제13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필요(출입국 질서 관리 업무 수행)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sup>44)</sup>할 수 있게 되는바, 두 조항이 상호 충돌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임.

44)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등록부에는 외국인아동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기록되는바, 출생등록증명서 발급을 통해 부모의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

## 아. 출생등록부의 폐쇄(안 제19조)

안 제19조는 외국인아동 본인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출생등록부를 폐쇄하도록 규정함.

### [제정안 원문]

제19조(출생등록부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등록부를 폐쇄 한다.

1.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임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출생등록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부”는 “출생등록부”로 본다.

(1) 19세 이후 출생등록부 폐쇄 여부 관련, 제정안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인아동”은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외국인아동 본인의 연령이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외국인아동이 19세에 도달하여 성인이 된 경우, 외국인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으로서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출입국·체류질서의 확립 및 관련 기관의 업

무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19세가 된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부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따라서 안 제19조제1항의 출생등록부 폐쇄 사유에 본인의 연령이 19세에 도달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 폐쇄 사유 중 ‘부재선고(不在宣告)’ 관련, 부재선고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남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잔류자에 대하여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 및 가정법원의 선고에 따라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제도임.<sup>45)</sup>

즉, 부재선고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에 잔류한 “국민”에 관한 절차인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정안에는 적용 여지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45)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자. 준용 규정(안 제30조)

제정안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등록 관련 조문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안 제30조에서는 별도로 가족관계등록법의 준용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정안 원문]

**제30조(준용)** 이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22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 제1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부”은 “출생등록부”로 본다.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의 준용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1) 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9조제1항·제2항(항해 중의 출생)<sup>46)</sup>과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sup>47)</sup>를 준용하면서, 안 제20조에서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는바, 가족관계등록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사망의 신고에 준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91조<sup>48)</sup> 또한 준용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4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4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2) 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법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sup>49)</sup>,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sup>50)</sup>를 준용하면서도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sup>51)</sup>는 준용하지 않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제89조에 따르면 제87조, 제88조에서 규정한 통보서에서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규정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48

4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